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대한민국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질의서(List of Issues)

규약 이행에 관한 헌법적 및 법적 체계(제 2조)

1. 동 규약 제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해, 동 조항을 계속 유보할 필요가 있을지를 재검토하는데 있어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채택한 (개인진정에 대한) 견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도적 및 입법적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와 당사국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채택한 모든 견해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파리원칙(유엔총회 결의 48/134)을 준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을 선발 및 임명하는데 있어 명확,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입법의 부재를 다루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3.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또는 관할권 내에 등록된 모든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동 규약에 따른 인권기준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활동을 규율하는 입법적 체계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면화생산과 관련한 한국조폐공사(KOMSCO)와 대우인터내셔널의 활동 및 인도 Jagatsinghpur에서의 제철소 프로젝트와 관련한 POSCO의 활동과 관련하여 가능한 기업의 책임성을 다루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 양성평등, 민족, 인종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하는 혐오에 관한 옹호의 금지 그리고 소수자 인권(제 2,3,20,26 및 27조)

4. 사적 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의 차별을 다루는; 직·간접 차별 및 복합 차별을 금지하고; 출신국, 성적지향 그리고 성 정체성을 포함하여 종합적 차별 사유를 열거한; 그리고 효과적인 행정적 및 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종적인 동기의 폭력이 범죄화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특히 외국인을 목표로 한 인종차별과 증오표현, 특히 대중매체 및 인터넷 상의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정의 개념이 지니는 한계성, 가령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만 동 개념이 적용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점, 한국태생이 아닌 두 명의 이주노동자를 다문화가정의 정의에서 배제하는 점 등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6. 미혼모 및 미혼모 자녀; 탈북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애자등 성 소수자(LGBTI);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낙인에 맞서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병영 내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간 성적행위를 비범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국이 이성간 및 동성간 강간행위(준강간행위)와 강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우(취급)을 일치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시해주십시오.
7. 다음의 경우: (a) 결혼생활 및 사회 내에서 여성,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b)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구, 특히 의사결정 직위를 포함한 정치적 및 공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관련 통계를 포함 바람); (c) 근로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제 2,7 및 24조)

8. 배우자간 강간의 범죄로서의 성격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사적인 가족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사건의 신고를 독려하고 이들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기소 및 제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해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아동대상 성범죄와 교내폭력 및 왕따 문제 등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구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대 테러 조치(제 7,9,10 및 14조)

9. 당사국이 대테러 법률, 특히 동 규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여 “테러 행위”를 규정하고, 통신의 도청, 수색, 구금과 추방을 규율하며, 테러행위나 관련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법적 보호 및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생명권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제 2,6,7,9 및 10조)

10. 청년 및 여성층에서 특히 높은 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및 그 조치의 영향을 보고해주십시오. 법률상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주십시오.
11. 다음 사안: (a) 고문이 형법 상 별개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b) 고문 및 학대혐의가 효과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조사되는지 여부; (c) 어떠한 형법 조항에 근거해 고문 및 학대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자가 기소되었고 어떠한 종류의 제재가 부과되었는지에 관해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제4차 국가보고서(CCPR/C/KOR/4)의 121항에서 명시된 “현대적 보호장비”, 징계로서의 독방구금조치, 그리고 “보호장비”(가령, 수갑 및 안면보호구)의 사용이 응보적인 목적에서가 아닌 보호적인 목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이전에 사용 가능한 대안에 관해 보고해 주십시오.
12. 심리사회적인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중 정신병원(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원된 사람의 수를 감소시키고, 이러한 시설에 수용된 자들을 독방감금조치, 신체적 폭력, (신체)숙박 그리고 과도한 약물치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강제 불임시술을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3. 군대 내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와 같은 혐의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며 피해자는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제시해주십시오.

개인의 자유 및 안전,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처우, 그리고 공정한 재판(제 9,10,14 및 24조)

14. 모든 형사상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이 판사 또는 법률이 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에게 즉각 인치되어 구금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받게 되는 자동적 권리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또한 허용되는 재판전 구금 기간을 제시해 주십시오.
15. 비호를 구하는 아동을 포함,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구금 지속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을 규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그와 같은 구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사법적 심사를 하는 것이 동 규약 제9조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당사국이 동행자가 없는 아동을 포함하여 비호를 구하는 아동을 정기적이며 적기의 구금에 대한 심사없이 부적절한 시설에 구금한다는 (NGO들의) 보고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구금에 관해 비구금형 대안을 제공하고, 이러한 구금이 오직 최종적 수단으로서,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16. 위원회의 기존 권고(CCPR/C/KOR/CO/3, para. 14)와 관련하여, 당국이 신문도중 변호인의 참여를 여전히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명확히 밝혀주시고, 만일 그렇다면 이에 관한 근거 및 이와 같은 제한이 동 규약 제 9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망명신청자 외에) 외국인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한다는 정보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7.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구금 상황을 개선하고, 구금시설 밖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용자들의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법무부가 2010년 2월 교정시설이 수용자들이 민사, 행정 또는 가사소송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때 수용자들로부터 사전에 호송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도록 한 지침에 관한 정보와 이러한 지침이 개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노예상태 및 예속상태의 제거(제 8조)

18. 형법상의 “인신매매”의 법적 정의에 의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가 금지되고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노동, 착취와 학대에 노출되도록 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상의 제한, 즉 고용주의 허가에 의해서만 직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사항을 다루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 (a) 취약한 인구집단, 특히 외국인근로자, 한국 장애 남성 그리고 성매매로 체포된 사람들 중 인신매매 피해자를 파악해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b) 언론과 NGO가 2013년 보고한 사항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에 정부가 연루되었다는 주장을 수사하고,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해; (c) 위협, 신체적·성적 괴롭힘과 폭력, 주당 휴일이 없는 과도한 업무시간, 저임금, 비인도적인 대우 및 부적절한 숙소와 식사와 같은, 외국인 농업 근로자 및 한국선적 어업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강제노동과 착취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d) 예술홍행비자(E-6) 및 국제결혼브로커들이 이주여성을 강제성매매 또는 강제노동을 위해 인신매매에 대한 위장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인신매매 사건에 관해 착수한 수사 및 기소 통계 정보와 개정 「형법」에 따른 실제 유죄판결과 피해자에게 부여된 구제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또한 일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한국 남성들이 염전에서 강제노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4년 3월 개시된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해 보고해 주십시오.

사생활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제 17조)

19. 외국인, 수용자, 군인을 대상으로 의무적 HIV검사를 실시한다는 보고와 병원이 환자의 사전 동의없이 HIV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러한 행위들이 규약 상의 국가의무와 어떻게 합치되는지를 설명해주십시오.
20. 개인의 통신(인터넷, 전화, 이메일, 팩스 통신을 포함)과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 및 도청, 분석, 사용 및 저장에 관한 현행 법률과 실태; 개인

의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침해에 대한 현재의 법적 보호(제도)와 그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다음의 행위가 규약 제17조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a)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회현장 인근의 모든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경찰의 “기지국” 조사; (b)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이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정보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 (c) 전화, 전기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6, 12, 3 개월 동안 사용자의 통신정보를 보유하는 것; (d)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통제하고, 위치 정보를 확인하며, 사용가능한 기능과 데이터를 찾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것. 또한 당사국이 전기통신사업자 “긴급도청(wiretap-ready)”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는지 밝혀주십시오.

양심과 종교적 신념의 자유,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제 18, 19, 21, 및 22조)

21. 위원회의 기존의 권고(CCPR/C/KOR/CO/3, para. 17)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도입을 위해 진전된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의 성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출된 법안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22. 종교재단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종교 행사나 종교 수업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해주십시오.
23. “공익을 해치는” 또는 “허위 통신” 과 같이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여 인터넷 내용을 차단하는 정부통제기관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인권) 옹호자들이 공익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 허위 정보를 유출하였다며 형사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국은 (a) 명예훼손의 광범위한 정의를 개정하고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며, (b)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적시해 주십시오.
24. 위원회의 기존의 권고(CCPR/C/KOR/CO/3, para. 18)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국가보안법」 상의 개념들을, 특히 동 법의 7조에 명시된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동 법이 규약 상 국가의 의무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동 법을 개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 건수와 기소 건수가 2008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고, 동 법이 당사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는 사람 등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통합진보당이 「국가보안법」 제7조 상의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찬양/고무한다고 하여 기소된 것과,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한 것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25. 언론인과 인권옹호자들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인권 관련 문제 및 국가공무원의 부패 등 공익에 관한 사안을 보도/보고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업무에 있어 괴롭힘, 위협과 불법적 감시를 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6. 평화적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한 법적·실질적인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a) 평화적 집회를 경찰이 실질적으로 허가하는 체제, (b) 시위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와 「형법」 제314조의 영업방해죄 적용, (c) 촛불 시위(2008), 용산 철거민 시위(2009), 쌍용차 대량해고 반대 시위(2009), 한진중공업 노조구성원 지지 시위(2011), 세월호 참사 이후 이어진 시위(2014)와 같이, 정부의 정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시위자들을 체포, 구속, 기소한 것, (d) 집회의 참여를 제한하고 시위자의 이동을 방해함으로써 집회와 시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경찰이 차벽을 사용하는 것.
27. 위원회의 기존의 권고(CCPR/C/KOR/CO/3, para. 19)와 관련하여, 법률 및 실제에 있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진전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KGEU)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집단행동과 여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도자가 체포, 구속되었다는 보고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었는지 여부와 (b)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아동의 권리 (제24조)

28. 당사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적절한 출생등록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당사국이 부모 중 한명만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당사국 내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시 한국 국적을 부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